

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0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

•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상범 농업정책과장)

가. 개정이유

○ 농촌발전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(안 제3조)

-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연장

다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농촌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금 존속기한 연장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 외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